

"20대 국회, 경제민주화를 심자!"

20대 총선 정당초청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일시 | 2016년 4월 5일(화)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

후원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프로그램

- 16:00 사회 김성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16:10발표1 민생의 위기와 각 당 민생과 경제민주화 공약평가**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16:25발표2 경제민주화를 향한 을(乙) 들의 연대**
 신규철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16:40 정당토론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제윤경
 국민의당 비례후보 채이배
 정의당 비례후보 이정미
 노동당 정책실장 장흥배
 녹색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하승수
- 17:00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 17:30 종합토론 및 마무리발언
- 17:55 폐회

목차

발제1	민생의 위기와 각 당 민생과 경제민주화 공약평가 / 김남근	04
발제2	경제민주화를 향한 을(乙) 들의 연대 / 신규철	36
토론1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44
토론2	국민의당 / 채이배	45
토론3	정의당 / 이정미	46
토론4	노동당 / 장홍배	62
토론5	녹색당 / 하승수	53

민생의 위기와 각 당 민생과 경제민주화 공약평가

김남근 /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I. 민생의 위기

1. 가계부담의 증가

가계가 부채를 통해 가계를 꾸리면서 가계부채의 숫자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1,200조원(1,206조 9,798억 원)을 넘었다. 전년도 대비 122원이 증가하였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의 속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어서 위험성이 더 심각하다. 2004년 100.8%에서 2011년 131.3%, 2014년 136.4%에서 불과 1년 만에 144.2%로 최고로 증가하였다.

주거비부담의 증가도 심각하다. 가계비의 지출 중 주거비 비중은 2012년 8%를 넘어선 이후 2013년에는 8.2% 등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5년 서울지역 전세가격 상승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구유럽에서는 자기소득에서 주거비 부담이 3분의 1이 넘는 경우를 정부의 주거지원이 필요나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서울의 청년가구의 3분의2는 이러한 주거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비부담의 정도도 심각하다. 국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7%로 같은 기간 독일 1.0%, 프랑스 0.8%, 미국

2.4%, 일본 2.1% 보다도 훨씬 크다.¹⁾

2. 가계소득 증가의 정체

가계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의 증가는 정체되고 있다. 국민소득 중에서 임금으로 배분되는 몫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75.8%에서 2011년 68.2%로 7.6% 포인트 하락하였고,²⁾ 20-30대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2015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민생의 기저를 이루는 ‘가계’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3. 8.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20대 이상 남녀 중 54.9%가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³⁾, 우리 가계들이 점점 자신이 중산층에서 미끄러져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의식이 커져 가고 있다.

3. 고용불안

고용불안도 심각하다. 재벌그룹에 속한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 명 중 비정규직은 81만명으로 41%나 되고, 그 중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64만 명으로 32%나 됨.⁴⁾ 재벌·대기업의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한 결과 재벌그룹에 종사하는 노동자중 40%가 비정규직이다. 청년취업자의 3명중 1명만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취업자 10명중 1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2016. 3. 23.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5년 9.2%로 상승하였고,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5%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의 격차, 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1) 한국은행, “주요국 소비대비 교육비비중”, 2012년 기준.

2) 2014.4.27.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3) 서울경제, “중산층 70% 복원 말로만” 2014. 6. 2.

4) 10대 재벌의 13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49만 명 37.7%이고, 그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명 30.7%나 된다.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은 대기업의 47% 수준으로 격차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대기업 노동자와 비교하여 34.6%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하여 근로빈곤층이 500만 명이 넘고 있다.

4.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

자영업자들의 빈곤층화 경향도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폐지로 재벌대기업들이 빵집, 떡집, 문구, 공구, 비빔밥, 자동판매기, 골판지 등 중소기업인 적합업종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 2002년까지 허가제로 대형마트의 진출을 규제하던 정책이 등록제로 규제가 풀리자 불과 5년 만에 대형마트가 포화 상태가 되어 2008년경부터는 SSM 형태로 골목까지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형태도 10,000㎡를 초과하는 초대규모유통점이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몰락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복합쇼핑몰이 진출하면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 만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79%가 감소했고, 의복신발가죽제품은 53%, 개인서비스업 42% 이미용업 38%가 감소하였다. 복합쇼핑몰, 대형아울렛의 진출로 주변상권이 초토화 된 파주, 용인, 수원 등의 사례는 재벌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침탈당한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거나 자기의 근로소득도 벌지 못하는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5. 민생대책이란 민생안정

서민의 생활, 즉 “민생(民生)”의 개혁이란 역사적으로 민생의 안정(Stabilization)⁵⁾을 추구하는 것이다. 민생의 안정이란 가계의 안정과 직장의 안정을 포괄한다. 가계의 안정은 주거비, 교육비(등록금), 통신비, 가계부채 등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인상

5) 서유럽에서도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이란 타이틀로 임대차갱신제도, 임대료 조절을 위한 임대료 가이드라인, 임대료 인상률 규제,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등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을 규제하여 가게의 운영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직장의 안정은 고용이 불안정 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노동자의 직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의 안정화와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보호 정책 등 자영업자의 직업의 안정을 포함한다. 대기업과 종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하도급업체, 대리점, 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등한 상생교섭을 통해 성과와 이익을 공유하는 공정경제, 상생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민생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위와 같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공약을 중심으로 야3당의 정책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⁶⁾

II. 야3당 민생공약의 총체적 방향

1.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정책공약의 목표를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3대 비전을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3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7대 약속으로 1)좋은 일자리창출과 국민의 행복한 민생경제, 2)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3)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4)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5)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6)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7)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제시하고, 150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시대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인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해법 : ‘불평등해소목표제’ 도입”이라는 타이틀로 「777플랜」 제안을 하고 있다. 현재 61.9%(2014)인 GNI 대비 가계소득을, 현재 68.1%(2012)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 65%(2013)인 중산층⁷⁾을 각 70%로 복원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747 성장공약이나 박근혜 정부의 474 성장공약과 대비하여 양극화 해소의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현재의 ‘나홀로 성장체제’를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과 더불어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 한다는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6) 야3당이 일괄적으로 민생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어서, 이 글은 3월 중순까지 발표된 중에서 주요한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당의 경우 공약발표가 늦어지고, 공약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많은 부분 정리하지 못하였다. 정의당의 경우도 전체공약집을 중심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정의로운 경제의 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7) 중위소득 50-150%인 계층

2. 국민의당

국민의 당은 “힘든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 공정과 혁신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경제구조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처럼 불공정행위 갑질근절과 함께 중소수출기업과 Start-up 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 안철수 대표가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키우기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의 해결대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정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들이나 공약 등 새로 눈에 띄는 공약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정의당

정의당은 “국민월급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이라는 타이틀로 총선 대표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 민생개혁(가계부담 완화), 복지확대 등의 양극화 해소 정책을 시행하면 구체적으로 각 가계별로 가계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추며 대·중소기업 불공정근절과 이익공유제 등도 그 결과적 귀결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 해소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노동개혁 과제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회기 동안 시민단체와 상인단체, 자영업자단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학생단체, 중소기업단체 등 대중단체에서 제기해 온 경제민주화, 복지, 민생개혁의 제도개혁 과제들을 정책공약에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

III. 가계부담완화 민생공약

1. 주거비 부담의 완화

1) 더불어민주당

1. 매년 15만호 이상 공급하여 향후 10년 동안 재고량 250만호, 13% 달성
2.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그 뒤 국민연금의 투입을 통한 재정충당 방안 마련⁸⁾
3.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공급
4. 임대등록제 도입, 리모델링비용 지원 등으로 준공공임대 정착
5. 전월세 전환율 기존 배수에서 기준금리+a로 변경(인하), 임대기간 연장 등 임대차 권리관계 개선
6. 보증증권 기반, 전세자금<누구나 전세보증제도> 도입

2) 국민의당

1. 청년희망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 comeback-home 법
2.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대출상환 출시와 보증보험 개선

3) 정의당

1.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30평 기준 월53만원에 공급, 뉴스테이보다 월97만원, 연1,164만원 저렴.
2.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월평균 11만원 → 20만원 인상
3.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로 도입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5.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확대

8)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보도자료,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다’ 돌려드립니다”, 2016. 3. 4.
이 보도자료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으로 국민의 삶 개선, 경기부양으로 좋은 일자리까지 창출, 산업을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도 제고 1석3조 효과”라고 발표.

6.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이행

2. 교육비 부담완화

1) 더불어민주당

1.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에 소득 3,600만원 이하)으로 최대 200만원 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현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2. 장기적으로 소득하위 계층에 대하여 장학금 제도와 별개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3. 고교무상교육 실현
4.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5. 교복값 30% 인하, 학교 주관 교복구매 의무화와 교복 가격공시제 도입
6. 통합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2) 국민의당

1. 학자금 이자율 50% 경감
2. 대학입학금 폐지/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3.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

3) 정의당

1. 고교 무상교육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170만원 경감
2. [진짜 반값등록금]
국가표준 등록금으로 진짜 반값등록금(사립대 평균등록금 734만원→384만원)

3. 의료비부담의 완화

1) 더불어민주당

1.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제 폐지
2.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폭등 방지
3.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2) 국민의당

1. 실손보험료 인하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2.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3. 간호·간병서비스 제도의 확대
4. 공공 보건의료 확충

3) 정의당

1. [건강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소득(능력)별 부과로 552만 지역세대 월 4.7만원 보험료 인하
2. [병원비 인하]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로 민간의료보험 가구당 34만원 부담 해소

4. 출산·보육비 부담의 완화

1) 더불어민주당

1. 육아휴직 급여 현 월 통상임금 40%에서 100%로 인상
2. 남성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3.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7개에서 200개로 확대 및 다양한 취업훈련 프로그램 개방

4. 중앙정부가 보육예산(누리과정) 100% 부담
5.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 이후 국민연금의 투자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 제시

2) 국민의당

1.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2.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 2-1.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 2-2.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3.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 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센터 설치

3) 정의당

1.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 육아휴직 인상 및 기간 확대]
출산종합용품 100만원 제공, 육아휴직급여 30-50만원 추가

5. 통신비부담의 완화

1) 더불어민주당

1.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 극대화
2. 제조사의 통신사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3. 단말기 가격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국내 고액 단말기의 거품을 빼는 단말기
4. 공용 WiFi 무상제공 및 공공 WiFi 확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Super WiFi 구축
5. 음성·문자·데이터 통화량 이월 또는 재활용

2) 국민의당

공약 없음.

3) 정의당

1. 기본요금 폐지로 연간 4인 가구당 월 4.4만원(연53만원) 절감

6.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1) 더불어민주당

1. 1단계 :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담경감
2. 2단계 :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3. 3단계 : 개인 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2) 국민의당

1. 지역밀착형 서금융기관 역할 강화로 자영업자 부채위험 경감
(자영업자 대부업체 고리대출을 서민금융기관대출로 전환)

3) 정의당

1. 저소득층 부채탕감 및 부실채권 규제
2. 채무자 우호적인 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지원
3. 최고이자율 일치 및 20%로 인하
4.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5.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억제
6. (가칭)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7. 광역시도별 도민은행 설립

IV. 비정규직,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경제약자 보호(경제민주화 공약)

1.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화

1) 더불어민주당

1. 기업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임금증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동소득분배율 높인다
2.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증가를 위해 지자체 주도 생활임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민간기업 노동자까지 적용 유도
3.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연평균 13.5%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4. 비정규직 많이 사용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확대, 1년 미만 근속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등을 통해 현행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11.8%) 수준으로 감축
5.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6. 재벌총수 일가의 “꿈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공개 제도 개선 추진

[해고규제와 일자리 확대]

1.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2. 자발적 퇴직자, 퇴직 3개월 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3.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장 1년까지 확대
4. 수급요건 완화 및 장년 알바와 일용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확대
5. 정리해고 사유 제한 및 재고용우선 의무화 도입
6.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부과와 손해배상제도 도입
7. 희망퇴직, 권고사직 시 인력퇴출 프로그램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 부여
8.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9.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자 근로시간 한도 적용
10.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2) 국민의당

1.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하도급 근로자 보호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에 인사와 노무관리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법 적용
2. 파견수수료 인하
3.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4.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5. 육아휴직근로자 대체근로자 확보 의무화
6.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7. 기간제근로자 사용휴지기 도입
8. 상공회의소에 대비되는 노동회의소 설립 검토

3) 정의당

1.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
2.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3. 공공부문과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 쉬은해고 규제, 3대 괴롭힘 방지, 4대보험 강화로 고용안정
5. 모두에게 연간 유급휴가 30일 이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6.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경력단절 방지로 여성 일자리 개선
7.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성별 고용·임금 실태 공개제도
8. 노동, 경제 문제를 다룰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2. 청년의 고용과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

1) 더불어민주당

1. [청년일자리 70만개]

공공부문 34만8천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 25만2천개,
주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 11만8천개

2. 청년안전망 도입 : 취업활동비 지급(월 60만원 × 6개월)
3.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4. 구직촉진수당 지급

2) 국민의당

1.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2.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3. 청년구직자 인권보호
4.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보장
5. 정당국고보조금 10% 청년사업 할당 의무화
6.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7. 청년연령 조정
8.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3) 정의당

1. 공기업·대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와 여성/고졸/지방 기회균형채용
2. 청년 디딤돌 급여 : 연간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하는 청년디딤돌 급여신설

3. 자영업의 안정화 : 적합업종과 골목상권의 보호, 상가임대차 안정

1) 더불어민주당⁹⁾

1.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10,000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규제, 다만 시·도시자사가 유통상업 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2.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대상의 확대
3. 퇴거보상제의 도입
4.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
5.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추진
6.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 중소기업,
7.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자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확대
8.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2) 국민의당

1. 환산보증금제 폐지하고 <상가 공정임대차 조정위원회>설치
2. 계약갱신청구권 대상기한, 임대료 상승을 상한 등을 지역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3. 지역민방위대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
4.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로 자영업 부채위험 경감

9)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 와 비교검토 필요

1.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권을 10년 보장하고 재건축 시 우선임차권을 보장’
2.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3. 갑질 근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담합금지 규정에서 자영업자를 예외로 인정’
4. 재벌 등 소위 ‘금수저’들의 문어발 확장에 맞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을 법제화’
5.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존 및 경제활동보장지역의 자율지정 실시 및 지원’과 “(가칭)지역경제활동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 정책을 보완
6. 혁신형 자영업 육성을 위한 ‘세대융합형 소상공인 사업 모형 구축 및 추진지원’정책
7.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

3) 정의당

1.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진출 규제(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
2.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과 영업제한
3. 변종 SSM 규제와 사업조정제도 강화
4. 사회보험료 지원 및 건강보험료 인하,
5.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6. 과중한 부채부담 경감
7.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8. 모든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호

4. 대기업과 중소기업·종속적 자영업자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이익공유제 등

1) 더불어민주당

1.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 확대¹⁰⁾
2.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행위 등 갑질 근절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협력 추진
3.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공공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2차 협력사 보호
4.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근절
5.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등 갑질 근절 추진
6. 기술설명회를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행위 근절 방안 마련
7.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8.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임대료, 입점료 폭리 등 부당한 비용전가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0)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의 '더불어 성장보고서']에서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 이익공유제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국민의당

공정과 혁신 : 글로벌 강소기업 경제 구축

1. 제값받기 : 납품단가 연동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M&A 활성화 : M&A 플랫폼 도입
2. 갑질방지 : 이익공유제 도입,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징벌적 손해 범위확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중소기업 수출지원으로 전환)
3. 기술혁신 : 혁신 공공구매제도 확대, 특허 후불제 도입(국가 R&D 혁신)
선순환 창업생태계(중소기업청이 벤처 업무 총괄)
4. 패자부활 : 한국형 노키아 지원 정책 도입(기술과 인력 사장 방지)
과점주주 2차 납세 면제, 연대보증 폐지

3) 정의당

1. 공공·대기업 CEO 및 임원 대상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2.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3. 재벌 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4.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대한 갑질행위 규제
5. 가맹본부-가맹점 간 이익공유제 도입

V. 재벌개혁 공약

1. 재벌지배구조개선

1) 더불어민주당

1.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2. 우회출자,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교환, 기업집단 밖의 우호기업을 이용한 순환출자 등 실질 투자 없이 의결권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3.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금지
4.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을 요건 등 강화
5.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2) 국민의당

1. 주주 대표소송 제도 개선 및 다중대표소송 도입
(상법을 개정하여 자회사의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확대)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제도를 폐지

3) 정의당

1. 3년 내 기존 계열사 간 순환출자 해소
2.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소액주주와 근로자 추천이사 선임
3.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실시

2.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사익편취, 재벌금융사의 사금고화 방지 방지

1) 더불어민주당

1. 횡령, 배임 등 경제범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
2. 일감몰아주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대상을 확대
3. 재벌총수 일가의 “꿈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 추진
4.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5.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독립성 및 의결권 행사 강화로 시장에서의 견제기능

2) 국민의당

1. 일감몰아주기 금지

(재배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판단하는 지분요건을 간접지분을 포함하여 20%로 통일하고, 규제효과를 무력화하는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를 재정비)

2. 거액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기업 총수일가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형량 경감, 사면 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함.

3. 불법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다시 회사 경영을 맡는 것을 금지함.

3) 정의당

1. 재벌 대기업 CEO 등 고위임원의 임금상한제 실시

2. 재벌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

3.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4.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공익적 의결권행사 강화

5.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 강화

3. 재벌사내유보금 등 과세강화

1) 더불어민주당

1. 대기업 법인세 과세 정상화(과세표준 200억 기준 20%→22%, 22%→25%로 상향)

2.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3. 기업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임금증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동소득분배율 높임

2) 국민의당

1. 세금 없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

3) 정의당

1. 과다 사내유보금 중소기업과 이익공유제 재원 활용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도입 및 공유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2.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도입
3. 법인세 최고세율 MB이전인 25%로 환원
4. 거액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재계산제도 확대강화
5. 상속공제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 과세강화

4. 공정거래행정과 불공정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1) 더불어민주당

1.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활동 강화
2. 공정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3.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의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강화, 과태료나 과징금의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4.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5.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지원 기금”도입
6. 금융소비자 부담완화 및 보호 강화

2) 국민의 당

1.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확대
2. 공정위가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

3) 정의당

1.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징벌적 조치
2. 소비자보호 및 피해당사자 권리강화
3. 불공정행위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VI. 야3당 정책공약의 비교와 정책연합의 필요성

1. 각 민생대책(개혁)의 주요특징

1) 가계부담 완화의 방법

먼저, 야3당은 공통적으로 주거비,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가계부채 등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계민생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재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임대차갱신제도를 통한 주택임대차기간연장이나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19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임대차 안정정책이나,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록금이나 보육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표준등록금이나 표준보육료 등의 경제규제입법 공약도 제시되고 있으나, 규제의 상대방인 임대인이나 사립학교, 사립보육시설 등의 반발표를 의식해서인지 상대적으로 민생대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후퇴한 측면이 있다.

2)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의 원리금 부담의 증가로 인한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장기침체의 위기에 대응한 가계부채 위기대책 보다는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가구의 규제정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파트분양 집 단대출 시 DTI·LTV 규제 적용 등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대책논의가 있었으나,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일부 중산층 표를 의식해서 인지 공약발표에서는 이러한 가계부채를 축소하려는 공약 자체는 내지 않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대출형태가 일반화 되면서 가계가 부채 원리금을 갚기 위해 매월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가계부담의 증가가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책대안 제시는 소극적이고 추심업체로부터 지속적인 불법·부당 채권추심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에만 제한적인 공약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당은 가계부채 일반에 대책 보다는 가계부채의 가장 위험한 계층인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추어 서민금융기

관 설립을 통해 고금리대출을 서민금융기관의 중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고용불안 대책

가계소득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직업(직장)의 불안의 가장 핵심적 문제인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3당은 공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비정규직 사용 시 사용자의 부담증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규제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육아휴가 연장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의 경우 노동계에서 비정규직의 축소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책 보다는 비정규직 사용 시 사회보험료 증가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경제민주화 공약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과제로는 불공정행위 근절, 납품단가 공정교섭, 기술편취·탈취 방지, 초과이익 공유제 등의 주요내용인데, 국민의 당과 정의당은 동반성장의 과제로 이익공유제의 도입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공약하면서도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에서 포함되었으나 주요공약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벌·대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협력의 과제로는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진출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육성, 대리점, 가맹점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보호 등이 주요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비교적 이러한 자영업자 대책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19대 국회에서의 태도와는 달리 일정한 자영업 살리기 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구 내에서는 상가임대차 갱신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제민주화 행정의 지방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 민생개혁 실천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공약은 제시되지 않았다.

5) 재벌개혁

야3당은 공통적으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공약하고 있다. 국민의 당의 경우 재벌개혁 전반의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소수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을 강화하거나, 중소기업, 소비자 등 피해자 집단이 피해구제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재벌이 불공정행위, 담합행위, 총수일가의 전횡 등을 단념하도록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재벌사내유보금을 직접 겨냥한 과세와 중소기업과의 이익공유제와 연계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 야3당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 지향의 공통성

1) 경제민주화와 복지, 민생공약이 지향하는 목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통적으로 대기업과 가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등 재벌과 자영업자들 밀접하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받고 있는 경제관계에서의 양극화, 불평등, 격차의 해소가 민생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2)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청년문제 대책

특히 야3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청년실업과 빈곤 문제에 많은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비정규직 사유제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담금이나 사회보험료 대신부담 등 부담을 높여 비정규직을 사용유인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야3당이 모두 청년고용할당제(의무제) 시행을 통해 청년고

용 확대를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구직촉진수당을, 정의당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운 청년급여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거빈곤층인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조달하여 청년주거용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정의당은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임대료규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대·중소기업의 불공정해결과 자영업자 대책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당과 정의당이 공통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익공유제 시행을 공약하고 있으나, 더불어 민주당은 시행방법의 어려움 때문인지 2015. 12.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의 ‘더불어 성장보고서’에서 주요 정책으로 이익공유제의 전면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공약에서는 이를 빼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실효성 제고만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당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Start-up 기업제품의 공공부분 구매확대, 대기업과 중소혁신기업 사이의 M&A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아직 종합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으로 상가임대차 법정 갱신기간 10년 연장,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자영업자단체의 상생협상을 담합행위로 규제하는 대상에서 제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의당은 골목상권 보호, 적합업종, 상가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특히 복합쇼핑몰 진출규제, 과중 자영업자 부채 경감 등 자영업자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재벌개혁 과제

종래 재벌개혁의 과제도 많이 논의되어 오던 지배구조개선, 재벌금융사의 사금고화 방지,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견제 등 외에 공정거래행정의 개혁, 소비자집단소송 등 피해구제의 강화 등에 대해서도 야3당은 모두 공약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재벌사내유

보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야3당 내부에서 충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인지 과세나 중소기업과의 이익공유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으로 유도하는 정책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5)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대책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는 초점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에 맞추어져 있는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을 투자하여 청년주거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하고 있다.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고등학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등록금이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4분의 1이 넘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실질적, 보편적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점점 증가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야3당 공통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과 전체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20-30세대의 가계에서 관심이 큰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정의당만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6) 복지를 통한 가계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확대를 통한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의당과 국민의 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3당 모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일과 가정 양립의 목표의 실현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와 국공립어린이집 내지 보육센터의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3. 야3당 정책공약 차이의 성격

야3당의 정책공약은 강조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구체적 공약의 제시를 피하고 있는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이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해고 규제 등 노동규제, 경제적 약자보호 규제, 환경규제 등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반대하여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노동개혁정책,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와 민생개혁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야3당 사이의 공약이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 모순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각 당의 공약이 합쳐져 체계화 된다면 각 당의 공약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강되어 종합화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과 청년정책 공약도 불공정근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대등한 상생(집단)교섭 체계 수립과 이를 통한 이익공유제, 납품단가 대등협상 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청년 창업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이란 정책으로 종합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들을 체계화, 종합화 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청년정책 공약만 해도 각 당의 정책노선의 차이로 충돌하기 보다는 서로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4. 민생정책공약의 실현을 위한 정책소통과 정책연합 필요

다만 각 당 공약의 강조점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위원장 등 정책 담당자들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복지”, “가계부담(민생)” 등 각 개혁과제별로 상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국회의 일정이나 정세,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 등 상황에 따라 전면에 내세울 정책을 선정하여 정책연합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투자를 통한 청년 셰어하우스 5만호 공급계획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재벌 대기업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기숙사, 공공병원 등에 대한 공공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더 구체화 하여 공공임대 임대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시중 임대료 보다 어느 정도 낮게 임대료를 책정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손실 없이 몇 십 년 안에 수익률 몇 %을 보장하며 국민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식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총선을 앞두고 급히 만들어진 공약을 구체적 정책과 행정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공약의 정책화, 정책의 행정화 과정에서 야 3당 정책담당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러한 중요한 국민의 민

생(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정책연합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공약만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 공공기숙사,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투자의 수요는 매우 큰 실정이어서 정책연합을 통해 실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맞서 정치개혁의 전선도 잘 운영해야 하지만, 정치적 전선이 치열하게 형성될 때마다 실종되곤 하는 민생, 복지, 경제민주화 등 민생개혁 전선도 상실하지 않고 끈질기게 유지하며 민생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지원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맞서 포용성장, 공정성장, 정의로운 경제 등의 큰 담론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경제민주화, 민생, 복지 정책의 정치쟁점화, 정치적 합의의 도출을 통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별첨자료〉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5+5 10대 정책과제

〈경제민주화〉

1. 재벌개혁 :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30대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 해 정부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이 재벌대기업의 공간에 쌓여 있다. 상황이 이러한 것은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기업소득분배율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소득과 하청중소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며 재벌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폐지된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벌대기업의 자산운용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현행 22%에서 최고상위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상위구간에서는 38%로 올려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과도하게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2. 비정규직 : 쉬운 해고와 노동계약 반대, 비정규직 사유제한 및 차별철폐

정부·여당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5개 노동악법은 임금은 낮추고 노동시간은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고용안전망은 훼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업종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계약과 ‘쉬운 해고’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가 상황을 방관하는, 동안 재벌대기업과 정부 자신은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 상사·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와 범위의 제한이 요구된다. 더불어, 균등 처우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3. 중소기업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등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제도화되었지만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진입하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재벌대기업 등이 사전승인 없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이자,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체제의 확립,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복합쇼핑몰은 광범위한 영역과 업종의 지역중소상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주변 소매점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과 교통, 고용과 상권, 쇼핑의 질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점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대형 소매점 출점 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보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지자체 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 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4. 중소기업 : 불공정 하도급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등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은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의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다.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이윤을 나누어 가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 사전협약으로 공동의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 이익 달성 시 이익배분규칙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목표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는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청년 : 고용활당제 민간대기업 확대, 청년수당 실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구직기간과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은 기본적인 생활안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실업과 나쁜 일자리를 반복하면서 저임금단기일 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실업급여의 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함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더 넓고 더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청년고용활당제의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

6. 주거세입자 : 전월세 인상제한과 계속 거주권,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보다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20% 초과 시,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수도권인 경우 27%, 저소득층의 경우, 34%에 이른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전환 시 그 인상율을 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무주택자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7. 상가세입자 :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위한 10년 법정갱신기간 보장, 환산보증금 완전폐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도심과 부심권을 중심으로 강제퇴거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 밖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초기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손실도 막대하다.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갱신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8. 가계부채 : 폭리제한, 원리금 분할상환, 임의경매 제한 등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두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하향조정 되고 있지만 모든 대부거래에 예외 없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그 상한을 20%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의 LTV, DTI 완화와 저금리, 전월세 전환 추세 속에서 임차주택을 구할 수 없는 무주택 전세가구 중 상당수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하우스푸어 계층이 대략 15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계부채 정책과 하우스푸어를 위한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소위,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구제할 대책이 필요하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대출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주택을 경매 등으로 빼앗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어서 영미에서는 이를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약탈대출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훨씬 많아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15년 정부는 이러한 약탈적 대출구조를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상환하는 “장기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는 지원을 해 주었는데, 대상이 신용우량계층으로 한정되었다. 이를 가계부채 위험성이 더 큰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에서는 법인회생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회생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다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담보채권 금융기관이 주택을 경매에 넘겨 ‘하우스푸어’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일명 「하우스푸어 가정파탄 방지법」(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개정을 통해 임의경매로 인해 낙락으로 떨어지는 하우스푸어계층을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 통신비 :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대폭인하

이동통신3사는 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월 11,000원의 ‘기본료’를 부가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설비는 세계 최초로 5G를 선보일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 초고속 인터넷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저가통신사의 알뜰폰의 경우, 이미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라는 목적을 다 한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식으로 통신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못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분리공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10. 교육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가책임 보육이행, 반값등록금 실현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국가장학금은 전체 대학생 중 41%만 지급을 받을 뿐이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속한 대학생만 등록금의 절반 정도 수준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 상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른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온 결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 수 기준 10% 정도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에 외면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향한 을(乙) 들의 연대

신규철 /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전국 을(乙) 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20대 총선과제

-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추진
-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 * 유통산업발전법,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 등
- 재벌 카드사들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추진 (체크카드 0%대)
 - * 현재 매출액 구간별로 영세 가맹점(2억 미만, 0.8%), 중소가맹점(2억~3억, 1.3%), 일반가맹점 (3억~10억, 2.8%), 대형가맹점(10억 이상, 2%대)으로 나눠서 차등 적용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약탈적 수수료 체계 개편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체 등 중소기업·중소상인 단체 구성 및 '갑과 을'의 상생 교섭 지원
-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장기계약제도와 재개발·재건축시 임차상인 우선보호 및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임대료 상한선 추진
- 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 지역별 사라져가는 영세자영업자(문구업, 이발소, 책방 등)중 적합업종 신청 업종을 대상으로 상인협동조합 집중 지원
- *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지역화폐’ 사업 지원
- * 지역고유의 문화와 지역상권의 특색을 살린 구 단위 ‘골목상권개발센터’를 설립하게 하고 5년마다 풀뿌리골목경제발전계획 수립 추진
- *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중소유통물류단지’ 추진
- * 해당 ‘개발 상권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 임대차 계약’, ‘특색 있는 상권 개발’등 장기 협약 시스템 마련을 유도 하고, 그에 따른 사업 예산 지원

□ 노(勞)-상(商) 연대

-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인상 찬성…우리가 힘든 건 대기업의 상권침해” <한겨레 15.6.26>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들만의 구호가 아니었다. 지난 17일과 24일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기자회견에는 2000여명의 자영업자가 가입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함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의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인태연(사진) 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26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건 핑계”라며 “상생의 대상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인 회장은 인천에서 15년째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 회장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말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대기업이 중소 자영업자 시장 파괴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통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으려 자영업자들이 2010년 출범시킨 조직이다. 그는 또 “노동자의 임금 향상은 이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의 임금 인상을 막으면 그만큼 우리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라는 의미다.

인 회장은 “대기업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두루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 "최저임금, 우리 때문에 못 올려? 고양이가 쥐 걱정"

CBS 박재홍의 뉴스쇼 (2015-07-10 10:09)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상인연합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이 직격탄"

- 진짜 문제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위주의 불평등 구조
-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
- 대기업 횡포만 개선해도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 가능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부터 8.1%, 즉 450원이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턱없이 낮다. 총파업등 강력히 투쟁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측에서는 "과다한 인상이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중소 자영업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인태연 공동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인태연> 네, 안녕하세요. 인태연입니다.

◇ 박재홍> 회장님은 일단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 인태연> 저는 인천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옷을 팔고 계시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논란이에요. 내년엔 6030원으로 올해보다 450원 오르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입장은 뭘니까?

◆ 인태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자의 입장이지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이랑 이런 분들의 주머니가 차야 돼요. 저희 중소기업자, 저희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와서 물건 팔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지금처럼 안 좋아서는 저희 중소기업자들도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 박재홍> 그런데 회장님도 이제 옷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점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나 고용하고 계세요?

◆ 인태연> 저는 직원이 3명 있어요.

◇ 박재홍> 이 분들에게 인상된 6,030원 적용을 해도 큰 부담이 안 되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인태연> 상대적으로 부담은 조금 되죠. 그런데 어차피 저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지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조건을 만드는 게 더 본질적이지, 그분들 월급을 묶어놓고서 제가 먹고살겠다고 하는 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박재홍> 회장님은 큰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이제 경영계나 대기업들은 회장님들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 인태연> 핑계죠.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500조 정도를 공간에 쌓아놓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려진 복합쇼핑몰이라든가 대형마트들이 무분별하게 진출돼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을 파괴해서 이들이 괴멸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대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대리점이라든가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이윤구조가 굉장히 부당해요. 하다못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하면 일반 시장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받아가지고, 마진, 우리가 이윤이라고 그러죠. 이윤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상에 지역권 보장도 해 줘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막 시장에다가 한두 군데에서 장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네 군데, 다섯 군데 가게를 내줘서 결국에는 벌어먹고 살지를 못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결국 사실은 중소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인이 힘든 것인데, 이런 구조적인 것을 고쳐서 이들이 정당하게 벌어먹고 살 수 있으면 오히려 이들이 자기가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정당하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용시장이 여기서 안정이 되면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지 못한 1인 상인들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본질적인 차원의 것들이 중소 자영업자의 문제인데, 엉뚱하게 우리쪽 임금 인상이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도산한다는 논리를 대는 거는, 자신들이 우리 중소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삶을 괴멸시켜놓고서 우리 생각을 하니깐, 저는 그래서 참 고양이 쥐 생각하는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의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차라리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게 더 도움이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인태연> 그럼요.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 대기업의 너무 지나친 탐욕, 시장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그 다음에 중소자영업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소규모 시장에 대형 대기업이 들어갈 때 매출의 한 10% 이상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도 좀 시급하게 법적으로 제도화해 가지고 무분별한 중소자영업 시장 파괴를 멈추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건물주들이 마구잡이로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아

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을 일단 고치는 게 본질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임금인상을 갑자기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실제로 감당 못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연구비나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중소 자영업자들도 그런 간극으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죠.

〈생략〉..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올들의 총선연대: 발족선언문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서민들은 현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가량을 점유하고(44.87%로 세계2위-세계상위소득데이터베이스 파리대학, 2014), 서민들은 가계부채 1200조에 시달리고, 세계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과 OECD회원국 중 가장 짧은 노동자들의 근속연수와 네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들의 비중, 창업 5년 안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70%에 달하는 그야말로 헬조선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주거 보장 등의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 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중소상인들의 문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몰락한 처지를 대변 해 주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왔지만 취업난에 몇 년을 고생하다 막상 선택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에 놀란 청년들.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정책을 통해서,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합리한 임금체제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현실. 재벌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이 포위한 골목상권의 좁아진 시장에서 대기업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피를 빨리고 있는 중소상인들. 그러나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중소상인들의 처지가 몰락하고 있는 반면에 재벌대기업들의 공간에 쏠려 가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늘어서 이제는 7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헌법 119조에 보장된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해서 균형적인 국민경제 성장을 만들겠다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갈수록 권력화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대기업과 그에 영합한 정치권력 앞에서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권력 독점을 막고, 청년, 노동자,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의 주체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절한 소득을 분배받는 경제민주화, 시장정의를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경제민주화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민생을 목전에 두고도 집권을 위한 정치논리에 함몰되고, 재벌대기업 등 1%의 소수기득권층을 위한 규제완화와 활성화논리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서비스산업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산업 같은 공공재를 재벌대기업들이 사유화하려는 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추진해서 동네 이미용업을 재벌대기업에게 허용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그리고 골목상권의 빵집, 미용실, 치킨, 피자 등 서민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무한탐욕을 놓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허황된 거짓논리에 대응 하는 중소기업과 청년,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반대 등의 탐욕스러운 재벌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중소기업과 청년, 노동자들의 사회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을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각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정치세력 교체로 이번 총선이 치러질 때만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1%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정치세력들을 심판하고 퇴출시키는 을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에 필요한 정책에 반대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왔던 후보자들을 가려서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는 을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20대 총선은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심판하는 ‘경제민주화와 을(乙)살리기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때만 되면 집권여당이 꺼내드는 안보위기론에 민생이 실종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벌대기업을 살리는 경제활성화가 마치 추락하는 서민경제를 살릴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거짓된 논리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니다.

우리들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간 세월호사태가 1% 재벌대기업들의 무한 탐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저기 침몰하는 세월호를 구하지 못해 허둥대는 무력감이 아니라 소수 재벌들의 탐욕의 늪 속에 빠지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총선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20대 총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낙천낙선 및 지지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서 재벌체제의 종속화가 아닌 이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나아가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는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힘차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참가단체 일동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대상청정원대리점협의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코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맞사지터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주거권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주거연합, 나눔과미래, 희년사회, 참여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넝마공동체, 노점노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생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관악주민연대, 구로금천구세입자협회, 삼양주민연대, 한국장애인연맹, 반값고시원운동본부, 신시민운동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대구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노원주거복지지원센터, 금천주거복지지원센터, 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한울림장애인지원센터, 삶의자리, 홍사단, KYC(한국청년연합), 생명평화연대,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세상과연애하기, 대한성공회보통동나눔의집, 난곡주민도서관세숲, 난곡사랑의집,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동자동사랑방, 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동희망나눔본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임대주택연합, 비닐주택주민연합,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성동주거복지지원센터, 서대문주거복지지원센터, 송파주거복지지원센터, 영등포주거복지지원센터, 은평주거복지지원센터, 전북주거복지지원센터, 원주주거복지지원센터, 전주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권기독연대)

토론 1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토론 2

국민의당

채이배 / 국민의당, 비례후보

정의당 ‘경제민주화 및 민생’ 공약 소개

이정미 / 정의당, 비례후보

1. 가계부담완화 민생공약

1. 주거비 부담의 완화

1. 서민 주거 안정
 -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 소득하위 20% 이하 주거비 지원확대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 땅값·집값 거품 제거
 - 시세(실거래가) 기준 과표 산정
 -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확대
3. 주택 수명 연장
 -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이행
 - 감리비 예치제 도입
 -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 강화

-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강화
- 공정임금제 도입
-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의무화

2. 교육비 부담완화

1.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 국고지원으로 막힘없는 누리과정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 2020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 일반고 강화로 고교 서열화 해소
 - 고졸 취업장려금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2. 창의력과 인성이 자라는 학교
 - 쾌적한 친환경 건물에서 공부하는 선진학교
 - 중학교 2학년부터 한반 25명,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
 - 선생님의 행정업무 경감, 창의·인성지도에 전념
 - 초등학교 혁신학교 2배 확대로 미래교육 환산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로 스스로 공부법 신장
 - 수능수학 절대평가로 자녀의 생각하는 힘 키우기
 -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다양한 역사교과서
 - 학교와 동등하게 학원 선행학습 금지
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 재난위험시설 완전 해소,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 아동학대근절 신고시스템 정비
 -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배 확대

4. 민주주의가 살아 쉼쉬는 교육

-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 학부모 권리 보장
- 노동인권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총장 직선제는 대학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헌법과 국제표준에 따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학교로 학생중심 교육

3. 의료비부담의 완화

1.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 재편
- 동네의원→병원→동네의원으로 이어지는 환자 화송시스템 구축
-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여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억제

2. 전국민의 포괄적인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담당의사제도 도입

- 12세 미만 아동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담당의사제도 도입
- 충분한 설명과 적정진료가 가능한 수가제도와 지불제도 도입

3.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 감염병 예방 및 진료서비스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민간 역할 강화, 정부 지원 확대
- 법인의 공적 성격 강화 및 개인병원을 법인병원으로 전환 지원
-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인프라 지원
- 모든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시도 단위로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시립요양병원 등을 묶는 공공의료 벨트 구성
- 읍면동 단위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다양한 공공적 건강관리조직의 확충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4. 모든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 서비스발전기본법, 원격의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영리병원 허용 등 중단

- 국민의 기본적 건강관리는 건강보험제도 하에 동네의원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5. 신종감염병, 중대 재해 및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인력 및 예산 확대하여 실질적인 헤드쿼터기능 수행
 - 보건소 내에 질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감염관리 인력 확충
 - 안전보건공단을 직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대
 - 원청, 발주처가 재해 및 재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질수 있도록 기업살인법 적용
6.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보건의료개혁 추진
- 국회와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된 대통령 직속 건강불평등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위원회 구성
 - 시도 및 시군구별 건강위원회 설치
 -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태계 구축
 - 환자 및 시민사회 주도의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7. OECD 평균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종합병원, 중소병원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지원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의료인력 공급 지원
 - 의사, 간호사 등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불균형 해소
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우선 건강보험 흑자재원을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률 62%→80% 이상으로 확대
 -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입원진료비 100% 보장
 -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입원진료비 90% 이상 보장
 -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국회 내 보건의료 대개혁을 위한 특위 설치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추진
9. 계층간, 지역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 해소
- 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인프라 집중 확충
 - 지방교부세 교부시 건강취약지역에 건강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강불평등지수 반영

10.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강관리체계구축

- 출산 전부터 생후 12개월까지 모든 산모와 아이에게 보편적인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모든 초중고에 건강증진학교 확대 운영
- 초중고, 교육시설 근거 유해시설 설치 제한 및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공간에 술, 담배 광고 제한
- 의사 및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 감소를 위한 규제 강화
- 허약 노인 대상의 보편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 건강담당의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 등이 연계되는 건강관리정보네트워크 구축

11.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폐지,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근로외 소득인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과표소득 기준으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12.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 부담 해소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보험사 일방에 의한 선별가입, 기왕력자 가입거부 등 금지
- 표준약관제도 확대,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부 등 보험사 횡포 근본적 차단
-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규정을 없애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강화

4. 출산·보육비 부담의 완화

[자녀양육 사회책임제]

1. 임신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 임신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 도입(1단계: 전국 건강취약지역 / 2단계: 전국 확대)
- 모든 출산가정에게 100만원 상당의 양육종합물품인 '핀란드형 마더박스' 지급

2. 3대 육아 휴직제 보장

-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임신초기 사용)

- 육아휴직기간 3개월 파파쿼터제 도입 / 육아휴직급여 50~100만원 → 80~150만원 인상 / 육아휴직 기간 3개월 확대: 12개월 → 15개월
- 가족돌봄휴가제 신설(현행 가족돌봄휴직제에서 근로자 신청시 사업주 거부사유 수정)
- 3. 어린이(0~12세) 건강담당의사 제도 도입
- 4. 어린이(0~13세) 병원비 국가보장제 도입(입원비 본인부담금 5,125억원 건보 흑자분 사용)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1.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국공립대기자수 26만명 해소
 -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국공립비중 및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게 국고 지원 확대,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확충 방식에 있어서 리모델링,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등 사업수행방식 전환
 - 운동장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질 높은 병설유치원 확대
2. 지역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 역량 지원
 - 읍면동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중 ‘지역거점센터’ 지정
 - 민간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놀이터 등 개방해 민간보육 상생지원체계 마련
3.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우선 향상
 - 1단계: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향상(정부 지원)
 - 2단계: 보육교사 임금을 유치원 수준으로 인상(정부 지원)
4.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영아반 보조교사 및 유아반 보육교사 등 확대
5. 우수교사 양성 및 지원 시스템 강화
 - 1년 양성과정의 보조교사의 경우 채용 후 일정 경력이 지나야 담임교사로 배치
 - 원장, 교사 보수교육 강화 및 대체교사 인력 지원 확대
6. 보육119, 보육전담공무원, 개방형어린이집 실시로 안심어린이집 실현
 -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하면 곧바로 출동해 상황을 점검하는 ‘보육119’ 도입

-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부모 맞춤 보육 제공, 읍면동 보육시설 일상 지도 - 부모 직접 등하원 장려, 부모상담·교육, 운영위원회 참여 등 강화 등 개방형어린이집 실시
7. 누리과정 국고 지원으로 부모불안 해소 - (원 플러스 원)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 + 특별교부금 1% 하향 - (올해 긴급 지원)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
8. 보육료 지원 현실화, 바우처방식에서 시설운영비 직접 지원으로 전환 - 보육 바우처 방식이 아니라 시설 직접 지원으로 전환 -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 기타필요경비 적정화 평가 후 운영비 지원 확대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특성화활동 대체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5. 통신비부담의 완화

1. 기본요금제 월1만1천원 폐지, 가구당(4인 가구) 연 53만원 정도의 요금 인하 2. 모든 국민에게 최저 데이터 요금 1giga 보장 3. 통신비 원가공개로 부적절한 마케팅비 절감으로 통신비 인하 4. 알뜰폰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 인하 5.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석하는 통신비 심의위원회 설치로 통신비 가격 조절, 거품 제거
--

6.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1. 저소득층 부채탕감 및 부실채권 규제 - 채무자 중심의 대책으로 채무자의 회생 및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①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 강화: 부실채권 매각기준, 매각절차 등의 사항 법제화 / 파산·면책·사망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신용회복 또는 확정이 결정된 채권 등은 매각 금지
--

② 소멸시효 완성채권 거래, 추심 금지

③ 공적기구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2. 채무자 우호적인 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지원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
- 압류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 및 수준 재정비
-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절차 진행
-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
- 신용불량 등록기간의 축소 및 절차 간소화
- 채무조정대상 범위 확대 및 차입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자금 확대
- 휴면예금을 활용한 신용회복기금 조성을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법 제정
- 지자체별 금융복지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및 자립 지원

3. 최고이자율 일치 및 20%로 인하

-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20%로 일괄 인하 / 무등록 대부행위의 이자율은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규정
-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일원화

4.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5.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억제

- 부동산규제(LTV) 완화 반대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법제화
-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채권을 매입 후 채무자에게 장기모기지로 전환

Ⅳ. 비정규직,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경제약자 보호(경제민주화 공약)

1.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화

1.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처분 폐기
-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 살찐 고양이법 제정, 실패한 경영진 우선책임제

2.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
- 공기업·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여성노동자 임금 인상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3.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감축
-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 연차휴가 한달 이상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기회균형채용 도입
-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4.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 20대 국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반드시 비준
-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 5.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정규직화
 - 산재사망·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개정
 -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 6.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 노조설립 신고제 개혁으로 노조 결성의 자유 보장
 - 산별 교섭의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중장기 노동법원 추진
 - 공격적인 직장폐쇄 금지, 파업 손배·가압류 금지
 - 노동, 경제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2. 청년의 고용과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

[괜찮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1.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미취업청년 신규고용
 - 매년 청년 일자리 24.5만개 창출
2.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상시·지속업무 수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재벌 사내하청 등 즉시 정규직 전환
3.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안전,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증원
4.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장시간 근로 퇴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지켜 62만개 일자리 창출

5. 협동조합 청년 CEO 육성

- 새로운 고용모델로서 소규모 협동조합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협동조합 전문경영인 양성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존감 있는 채용]

1.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시 기회균형채용을 동시에 도입해 여성, 고졸이하 학력, 전문대와 지방대 출신 청년에 대한 차별 해소

2.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 고위 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취업청탁 방지
- 고위 공직자 취업 청탁에 의한 부당 채용을 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처벌 강화

3.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사진, 키와 체중, 출신대학, 출신지역, 부모 소득과 학력, 나이와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요소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및 면접시 해당 질문 금지

4. 취준생보호법으로 채용갑질 해소

- 채용갑질 해소하기 위해 채용 모집 과정에서 연봉(초봉) 공개 의무화, 채용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 제한, 불합격 통보 공지 의무화, 필기전형 점수 공개, 면접비 법제화 등 '취준생보호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실패해도 다시 잃어서는, 단단한 실업안전망]

1. 고용보험 전면개혁

- 사표 쓸 자유.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제공.
- 기여조건을 18개월간 180일 가입에서 최근 3년간 180일로 완화
- 구직활동 증명을 수급조건 취득 후 3개월 이후로 완화

2.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폭해소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50% 지원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재학생 포함) 전면가입
-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 최저임금 1만원과 연계해 월 18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3. 실업급여2(실업부조),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 고용보험 밖 실업자들에게 최대 1년 동안 최저임금의 80%까지 실업부조 제공
- 15-34세 청년에게 1년 최대 54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 제공
- 300만 이상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인간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고용보험료 징수

[생애 첫 일자리 개혁, 존중받는 젊은 노동]

1. 열정페이 OUT! 인턴제 폐지, 실습을 실습답게

- 인턴제도 폐지, 기존 인턴은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계약직으로 일원화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시 교육목적 명확화
- 현장실습 위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실시

2. 노동부 근로감독 2배 증원, 나쁜 일자리 검색제 도입

- 노동부 근로감독관 2배 증원으로 근로감독 철저, 명예근로감독관 도입으로 근로감독 강화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위반 악성사업장 인터넷 검색제도 도입

3. 청년일자리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

- 수습사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하게 한 최저임금법 조항 폐지
- 동일기여를 했음에도 30세 미만 가입자에게 실업급여 1달 삭감하는 차별 삭제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탈출, 인간다운 주거]

1. 월세 공정임대로 실현

- 정부 공인 안심중개포털 설치로 임대인, 중계인, 임차인 정보 평등화
- 정부 지원 받는 공정임대업자는 '공정임대료' 준수

2.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前 대한주택보증) 보증 하에 최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증금 대출
-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70% 미만인 자에게 연 금리 2%, 최장 10년 가능

3.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원룸 공정관리비 실현

- 공정 중개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공정 관리비 준수하며 수선문제 명확화
--

3. 자영업의 안정화 : 적합업종과 골목상권의 보호, 상가임대차 안정

1. 복합쇼핑몰·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 상업지역내에서도 대규모 점포 등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출점 제한 - 대규모 점포 등의 월 2회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는 등 영업 제한(위반시 등록 취소, 과태료 상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2. 변종 SSM 규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 현행 사업조정절차 간소화와 이행명령의 강제력 강화: 사업조정 신청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완료기간을 조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단축 / 적합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 사업 이양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3.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 - 현재 73개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을 대폭 확대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고시 -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경우에 제재 강화: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 / 중소기업청장은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 → 불이행시 2차적으로 주식의 처분, 기업분할 명령,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의 필요할 조치 4.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 -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인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고 실제 계약한 보증금으로 변경 - 현재 9%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하향 조정 - 상가분쟁에 대해 강제조정권한을 갖는 시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재개발, 재건축 관련 퇴거보상제도(영업장소 이전비용 또는 영업불가 손실비용) 도입

-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 상가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등 대규모점포의 권리금 적용 대상의 예외
- 건물주가 18개월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금 배상의무 면책 등
-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 결정 등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실시
- 상가임대차영향평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수립

5.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1%, 체크카드0%실현

- 영세·중소가맹점(우대 수수료율)을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
-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상한선 인하, 중소상공인단체에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권 부여
- 가맹점단체에 부당계약 여부를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신용카드 수수료 1%로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0%

6.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인하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두루누리사업 2’ 도입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

8.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부담 경감

- 공적 신용보증 확대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금리 대출 확대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상 최고상한이자 일치 및 20%로 인하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9.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역별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분쟁, 부채 등 종합상담 지원
- 지역상권 마일리지 제도,공공배달서비스 도입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지역상인협동조합 주도의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촉진하는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4. 대기업과 중소기업 · 종속적 자영업자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이익공유제 등

[재벌 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1.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징벌적 조치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한도 증액
 - 하도급 계약 정보공개 및 대기업의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현황 및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입증 요구
2. 불공정 행위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피해 당사자난 공익적 시민단체에도 고발권 부여
 -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3.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 불공정거래 피해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 도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소비자기본법 개정)
4.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 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율에 대한 차감 없이 거래비율 전체 증여세 적용
 - 규제대상 지분 요건 20%로 하향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 적용 대상 확대
 - 특가법상의 업무상 배임·횡령죄의 특례 조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
5.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 재벌 등 이득액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함
 - 재벌 일가의 황제면회와 황제노역 금지,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 횡령·배임 등 특가법 상 징역형 이상 선고 받은 자는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재벌의 독식 방지와 사회적 책임 강화]

1.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2016년 기준 공기업은 10배(약 1억5천만원), 대기업은 30배(약 4억5천만원)으로 설정
2. 과다 사내유보금 중소기업과 이익공유 재원 활용
 -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 부활
 -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

산운용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자산운용 소득에 대해 10% 추가 과세

3.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및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관련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액에 사용하도록 유도

4. 본사와 가맹점·대리점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이익공유제 실시

- 「대리점공정화법」과 「하도급법」에도 단체 구성 및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에서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은 예외로 인정
-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도입

노동당 토론문

노동체제의 전환 없는 경제민주화의 한계

장흥배 / 노동당, 정책실장

1. 들어가는 말

- 발제문은 민생의 위기를 시작으로 야3당의 민생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결론으로 야 3당의 민생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의 상호 보충 및 정책연합의 필요성 언급
- 민생 위기의 양상으로 주거비 부담 등 가계부담의 증가, 가계소득 증가의 정체, 고용불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를 다루고, 경제민주화 공약으로는 노동시장정책, 중소기업 문제, 가계
- 민생의 위기를 시작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나아간 것은 민생 위기의 궁극적 해소 방안이 경제민주화에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발제문의 한계
 - * 발제문은 야 3당의 민생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잘 비교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책공약의 상호관계와 위상이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민생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열거하고 각 정책공약을 비교하는 것에 그침. 정책공약에 소요되는 재정을 매개로 한 증세 문제를 누락한 평가도 이런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 야 3당의 정책공약의 상호보충 및 정책협약의 필요성을 결론 부문에 제시한 것은 수많은 정책공약 중 빠진 부분을 보충하면 완성적인 정책공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야 3당 민생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의 특징

1) 시대의 성격과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의 부재 또는 불철저

-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위기 : 노동유연화 + 금융자본주의
- 한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위기 :
수출주도성장 + 부채의존소비 → 수출절벽 + 소비절벽 → 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 이와 같은 위기 진단이라면 당연히 노동체제의 전환, 금융자본주의 규제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

2) 불철저한 정책수단

①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의 종식에 대한 비전과 정책수단의 부재

■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정책

- 불안정 노동은 장기 저성장 국면의 진입이라는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의 자리를 차지
- 임금소득의 하락 → 소득 불평등과 가계소득의 하락 → 내수 유지를 위한 가계부채의 확대 → 유효수요의 부족 → 투자의 감소 → 소득의 하락
- 이제는 불안정 노동 철폐를 외쳐야 할 때, 공공부문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수준으로 위기의 성격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없다.

■ 장시간 노동

-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주당 52시간(주 40시간 + 12시간)이라는 현행 법정노동시간이라도 제대로 준수하자는 것, 국민의당은 특별한 공약이 보이지 않음
-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위기의 성격에 대응할 수준의 충분한 일자리가 생길까?

■ 저임금 노동

-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필요 : 야3당 중 정의당만이 수용
-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말 수용했다면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대신 즉각적인 1만원 인상을 주장했을 것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은 원칙 확인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불안정 노동체제 종식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원칙 확인 수준에 그칠 것
- 정의당의 평균월급 300만원 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 이외 정책수단이 부재하고, 모든 소득구간에 동일하게 70만원 인상을 책정한 문제도 있음
- 전체적으로 불안정 노동체제의 종식 없이는 저임금 노동체제의 해소도 요원

② 조세체계 전환 정책공약의 부재

■ 한국 경제사회모델과 조세체계의 연동

- 박정희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과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체계의 수립
- 신자유주의 감세정책으로 이어짐
- 결론적으로 한국은 정상적인 ‘조세국가’를 수립한 적이 없음

■ 야 3당의 재정계획

- 더불어민주당 : 148조원의 비교적 큰 재정소요 정책공약을 준비했는데 재정계획은 재정지출 절감(7조4,000억원), 국민연금(10조원), 비과세·감면 정비와 법인세 인상(13조7,000억원)에 그침
- 새누리당/국민의당 : 50조원 안팎의 재정계획
- 정의당 : 사회복지세 20조원을 포함한 50조원 수준의 증세 계획

ex)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63%, 이것을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85%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연 소요 재정만 약 30조원.

야당의 재정 및 증세 계획으로는 복지

- 증세계획이 없으니 재정이 아닌 국민연금을 기본복지에 활용하자는 잘못된 주장

3. 노동당의 제안

1)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하자

■ 연대적 노동사회

：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지금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도 충분한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사회

■ 정책수단들

- ‘5시 퇴근법’ : 주당 노동시간 35 + 5시간제로 단축 → 약 235만 개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 1만원법’
- 기간제, 파견제 등 불안정 노동체제의 법률적 기초를 해체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분야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 3개월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
-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새로 생긴 일자리는 사용자에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하고 의무 준수에 인센티브 부여하고 위반에 제재
- ▶ 주 3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 또는 초단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과 노동권 강화

2) 수출주도성장-부채의존소비 경제모델을 ‘소득기반경제’로 전환하자

■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하락을 최소화
- 기계화 자동화 진척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
- 농민, 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수당 지급

■ 기본복지 확충

공급체계 개혁과 병행을 전제로

- 대학등록금 무상화
- 건강보험 보장성 85% 수준 인상
- 전월세값 통제
- 반값 정액 대중교통카드
- 통신비 인하

■ 가계부채 축소와 탕감

- 상환 어려운 생계형 부채에 대한 대규모 탕감책
- 주택담보대출

3)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체계를 고부담 누진 직접세 위주로 전환하자

■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 약 200조원 이상의 증세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 : 34.1%

한국의 총조세부담률 : 23.9%

■ 누가 부담할 것인가?

- 재벌증세 :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하고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 불로소득 증세 : 이자, 배당, 임대소득에 대해 각 100만원 이상 소득이면 분리과세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누진 중과세
- 소득세 강화 : 3억원 초과 세율을 38%에서 45%로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하고, 분리과세 항목들을 종합과세 항목에 편입해서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중과세
- 국방예산과 토건예산 감축으로 약 55조원 재정지출 절약

4) 제대로 된 중소기업인 보호정책을 펴자

-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중소기업의 집단적 단결권 보장
-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전면 확대

녹색당의 경제민주화 및 민생 관련 정책공약

하승수 / 녹색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녹색당 20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경제민주화 및 민생 관련 정책 공약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였음.

1-1. 기본소득

2-2 주거권과 토지정의

4-1. 노동

1-1. 기본소득

사람 그리고 생태계, 함께 살자

I. 총론

1. 현실과 진단

- ‘헬조선’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대한민국은 불안, 빈곤, 불평등, 팍팍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으로 뒤덮여 있다. 49.1%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22.5%에 달하는 체감청년실업률이 거론되지만, 사실 연령에 관계없이 삶은 팍팍하고 불안하다. 당장에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언제 벼랑 끝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90%는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기득권 세력은 10 : 90의 사회에서 90%의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미워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90%의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90%의 연대는 100%의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 비전을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 한 가운데에,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인 ‘기본소득’이 놓여 있다.
- 모두가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논리가 이 사회에 퍼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이 임금노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사회는 비인간적이기 짝이 없는 사회다.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임금노동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임금노동 외에도 가치 있는 일들이 수두룩하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임금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소득이 필요하다.
- 임금노동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모두에게 일자리를’이라는 허구적인 얘기만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는 창출되기 어렵다. 생태적 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이런 영역에서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당장 마을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이나 유기농업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현금수입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 필요하다. 임금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다.

- 기본소득은 팍팍한 삶과 불안을 털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어 줄 것이다. 절대빈곤이 사라지고,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다. 줄어드는 일자리와 심해지는 경쟁 때문에 팍팍해진 삶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 기본소득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로, ‘시민배당’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본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재’에서 나오는 수익을 환수하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민배당금을 1982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는 사례가 기본소득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토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공유재가 있다. 이런 공유재를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환수하여,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 한편 기업이나 개인이 버는 소득에도 사회공동체의 몫이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개인이 버는 소득의 90%는 그 사회공동체가 가진 공통의 자산 덕분이라고 했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도 세금의 형태로 일정 몫을 걷어 들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2. 기조와 방향

- 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한다.
 - 불평등과 빈곤해소, 불안으로부터의 탈피, 생태적 전환을 위해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간다.
 - 기본소득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 기본소득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세를 도입한다.
 - 재정확보의 면을 고려하여 2016년 입법화작업. 2017년부터 ‘기본소득세’ 징수, 1단계 지급 시작. 2020년 2단계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간다.

II. 세부 공약

가. 1단계 :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과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생태배당금을 지급하다.

- 1)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한다.
- 노인에게는 이미 70% 가까운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아닌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청소년·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우선 보장한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만15세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자립의 기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의 범위는 일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범위인 만 29세까지로 정한다.
- 식량주권 확보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하더라도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농민의 범위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되, 귀농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귀농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어민의 경우에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을 범위로 한다.
- 농민의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소농의 경우에 소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을 보면, 1980년에는 95.9%였고 우루과이 협상 타결직후인 1995년에도 95.8%였으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62.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2012년 기준으로 약 23.7%의 농가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 직불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4% 쌀농가가 전국 논 면적의 58.2%를 경작하고 있어서 전체 쌀 직불금의 절반이 상위 10%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애인에게는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38.7%로 국민 평균인 62.1%에 비해 한참 낮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가급여 형식으로 지급한다. 참고로 2011년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3만 6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정부가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은 8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고, 지급대상을 100% 노인으로 확대한다.

2)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생태배당금 지급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유연탄·핵연료에 대해서 생태세 과세를 통한 생태배당금은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한다.

- 현재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3.5조원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수는 대부분이 토건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에너지보조에 사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에너지가격을 왜곡시키는데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재원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려거나 생태적 전환을 앞당기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 생태세 수입은 전액 또는 80%를 생태배당금으로 지급한다. 80%를 지급할 경우에 20%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투자금액으로 활용한다.

참고: 미국의 생태세-생태배당 법안 및 한국의 기후정의세법안

– 미국에서는 이미 생태세-생태배당이라는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인 크리스 반 홀렌은 “건강한 기후와 가족안정법 (Healthy Climate and Family Security Act)”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탄소배출권경매를 통해 나온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참고할만한 생태세 법안으로는,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기후정의세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과세를 하되, 서민용 연료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핵연료사용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므로 참고가 될 수 있다. 박원석 의원안에 따르면 연평균 4.4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세율을 계속 올려나간다면, 세수증대효과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3) 기본소득세법 및 기본소득특별회계법의 제정 등, 필요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추진 하겠다.

- 기본소득세법 제정과 함께 기본소득특별회계법을 신설한다. 세목조정과 세율인상 으로 들어오는 세금, 세출구조개혁으로 확보한 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생태세법으로 전환하고, ‘생태배당에 관한 법률’을 신설한 다.
- 세출예산의 대대적 개혁 : 토건예산을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 탈도로, 탈담 선언. 국민참여예산제 실시
- 비과세. 감면의 원칙적 폐지 : 현재 존재하는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
- 세무행정의 전면 혁신 :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 세무조사의 전 과정 시민옴부즈 만 참관, 국세청 인사개혁, 기업/개인의 납세정보 공개, 탈세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및 자진신고 유도

나. 2단계 :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

- 보편증세(특히 소득세 보편증세)와 생태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전 연령대로 지급을 확대한다.
- 이 단계에서는 특히 과세미달자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5-10% 정도의 기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보편증세를 시행한다. 그러나 중·하위 소득자 의 경우에는 세금납부액에 비해 받는 기본소득금액이 크게는 10배에 달하게 되므 로, 신뢰만 확보된다면 이 단계에서는 보편증세가 가능할 것이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세금을 내고,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받자는 것이다.
- 2단계에서는 모든 연령에 대해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생태세 수입을 기본소득 재원에 통합시킨다.
- 참고로 강남훈 교수의 경우에는 현재 GDP의 1% 수준인 생태세를 GDP의 4% 수 준으로 올리고, 생태수입 중에서 20%는 생태경제 형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 하고, 80%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럴 경우에는 46조원(1905조원(2018년 GDP)*3%*0.8)의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의

생태세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체계를 설계할 예정이다.

- 증세를 통해 확보하는 194.7조원과 세출예산 낭비를 줄여서 마련하는 30조원, 기초연금 통합분 10조원, 양육수당 통합분 2조원 등으로 전 연령대에 월40만원 가량 지급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참고: 기본소득 공약에 관한 보충 설명

- 1단계 기본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충급여를 지급한다.
 - 기초생활보장선을 설정하고, 기본소득만으로 기초생활보장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 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선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으로 매년 결정한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제 같은 제도는 폐지한다.
 - 1단계에서는 장애여부에 대한 심사, 기초생활보장선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나, 노인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폐지되는 등의 효과는 있다. 그리고 잔여적 복지 개념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보편적 소득보장 개념의 기본소득+보충급여로 전환하여 권리성을 강화한다.
2. 1단계 기본소득의 월 40만원을 지급할 경우의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 규모는 아래와 같다.

구분		예상지출	재원마련 방안
우선 시민 배당	청소년 청년	9,799,564명 * 연 480만원 = 47조 380억원	- 토건예산낭비 근절, 세출개혁으로 연 30조원 확보 - 노인연금 예산 10조원 통합 - 증세 : 65.1조원 - 소계 : 105.1조원으로 재원마련 가능함. 2안에 비해 기존 세출예산의 개혁을 통해 연10조원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하는 방안임.
	농어민	1,495,969명(2,751,792명+141,344명-266,766명-1,074,646명-10,281명-45,474명) * 연 480만원 = 7조1807억원	
	장애인	1,331,725명(2,494,460명-129,427명-1,033,308명) * 연480만원 = 6조3,923억원	
	노인	8,757,647명*연480만원 = 42조 370억원	
	소계	102조 6,480억원(21,384,905명)	
〈기초자료〉			
- 2017년 인구추계(통계청)에 따르면 만15세-29세 인구는 9,799,564명임. 또한 만65세			

이상 인구는 8,757,647명임.

- 통계청의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는 112만1천 가구, 농가인구는 2,751,792명임. 이 중 만15-29세 농가인구는 266,766명임. 또한 만65세 이상 농가인구는 1,074,646명임. 또한 어업가구는 58,791가구이고, 어가인구는 141,344명임. 이 중 만15-29세 어가인구는 10,281명 만65세 이상 어가인구는 45,474명임.
- 등록장애인 현황(통계청, 2014년)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은 2,494,460명이고, 그 중 만15-29세는 129,427명, 만65세 이상은 1,033,308명임.

3.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방안

○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녹색당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관점에서 재원조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1) 조세형평성 증대를 통한 증세와 생태세 과세 2) 예산낭비 근절 3)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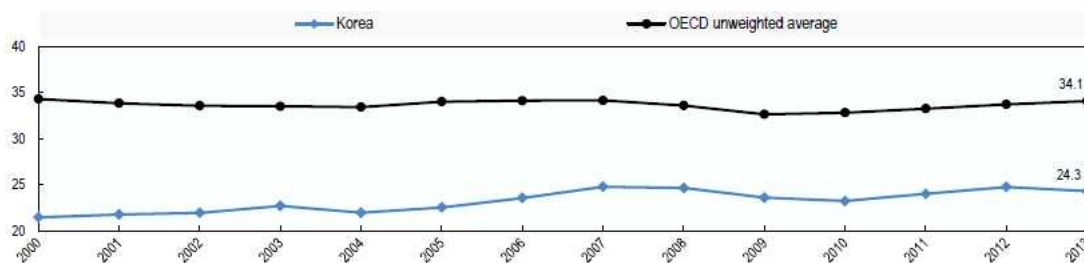
1) 조세형평성 증대를 통한 증세와 생태세 과세

○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정 확충 능력이 있느냐를 따질 때에 가장 먼저 볼 것은 조세부담률이다. 조세와 의무적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조세부담률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재정마련이 충분히 가능한 국가라는 것이 나온다. 그 동안에는 한국이 너무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여 왔는데, 그만큼 이후에 조세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국의 재정 통계를 비교한 'OECD Revenue Statistics 2014'를 보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34.1%이다.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48.6%이다(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4.3%이다. 정확하게 덴마크의 절반이다.

○ 만약 대한민국이 OECD 평균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린다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2018년 대한민국의 GDP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 수준인 34.1%수준까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린다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규모는 188.6조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덴마크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린다면 1인당 매월 60만원씩을 지급하고도 남는다.

○ 이처럼 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을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한

〈대한민국과 OECD평균 조세부담률 추이〉



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경험과는 상반되는 얘기이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조세부담률을 5~10년 정도의 시간 내에 10% 정도 끌어올린 사례들이 많다. 덴마크만 하더라도 그렇다. 1965년에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29.5%였다. 그런데 덴마크는 1971년에 조세부담률을 40.8%까지 끌어올린다. 불과 6년 사이에 조세부담률이 11.3%나 올라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져서, 덴마크가 망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덴마크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 행복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는 경제·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 한편 증세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것처럼 얘기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서 세수입이 반드시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조세란 과세대상과 세율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장과 연동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에 부과하는 탄소세를 매년 올린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과세되는 탄소세를 매년 올린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탄소세 부담으로 인해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세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과는 무관하다. 지금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지만, 담배세율을 올림으로써 담배소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세 세수가 증가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 상속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도 경제성장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설사 경제성장이 제로 또는 감소하더라도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세율을 올리면, 상속세 수입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금도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 등에서 부동산임대료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 불로소득은 경제성장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성장이 안 될 것이므로,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

- 증세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조세부담 수준은 낮으나,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못하고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증세〉

- 상대적으로 세부담에 대한 불만이 큰 중·하위층 근로소득자의 직접적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증세를 하는 것이다. 상속세 강화, 불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개발이익, 금융소득, 주식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탈세 근절,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핵발전 단계적 폐지를 위한 생태세 징수를 통해서도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2단계 증세〉

- 보편증세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 조세개혁 조치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중·하위층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덴마크 같은 국가에서는 소득이 많은 적든 일정한 세율의 세금은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다. 일정 몫을 부담하는 대신에 그만큼 받는 것이 많으므로 중·하위층에게는 이익이 된다. 이런 방식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참고로 덴마크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조세수입의 62%를 개인들이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에서 징수한다.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최고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의 24.2%를 개인소득세로 걷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내총생산의 4.0%만을 개인소득세로 걷는다. 그리고 신뢰획득을 위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기본소득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2012년 기준)〉

구분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20%대인 국가	덴마크(24.2%)
10%대인 국가	아이슬란드(14.2%), 핀란드(13.0%), 벨기에(12.6%), 스웨덴(12.5%), 뉴질랜드(12.4%), 이탈리아(12.1%), 캐나다(11.2%), 호주(10.4%)
7-9%대인 국가	오스트리아(9.9%), 노르웨이(9.9%), 영국(9.7%), 독일(9.6%), 아일랜드(9.5%), 미국(9.0%), 스위스(8.9%), 룩셈부르크(8.3%), 네덜란드(8.3%), 프랑스(8.2%), 스페인(7.4%)
4-5%대인 국가	포르투갈(5.9%), 슬로베니아(5.9%), 이스라엘(5.7%), 일본(5.4%), 에스토니아(5.3%), 헝가리(5.3%), 그리스(4.8%), 폴란드(4.5%), 대한민국(4.0%) , 터키(4.0%)
2-3%대인 국가	체코(3.8%), 슬로바키아(2.7%)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2015, 43쪽을 참고

2) 예산낭비 근절

○ 한편 증세 뿐 만 아니라, 예산낭비 근절 등 재정개혁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건예산 중 절반을 줄여도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토건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 등 토건사업 예산으로 사용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개혁과 함께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대규모 개발예산에 대한 시민예산심의제, 국민참여예산제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기초연금과의 통합

○ 한편 기본소득과 통합할 수 있는 일부 현금급여를 감안하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일정부분 충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예산이 7조 5,824억원이었는데, 지방비부담액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본소득과 통합 가능하므로, 일정정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2-2. 주거권과 토지정의

땅과 주택,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I. 총론

1. 현실과 진단

- 부동산은 한국 사회문제의 모든 연결고리에 중심에 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현재 한국사회가 공히 합의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삶의 방식이 우리 사회 전체는 물론 결국은 개인의 삶의 지속가능성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청년들의 주거문제와 부를 축적한 기성세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노후대책 마련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철저히 연결된 사회문제이다. 상가세입자들의 생존권과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낯선 이슈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 이렇듯 문제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다. 정확히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옹호한 기성 정치의 기만이 그 중심에 있다. 녹색당은 그 기만의 고리를 깨고, 미래와 시민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에 둔 부동산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비싼가, 부동산 소유 편중은 얼마나 심한가.
- 1963~2007년 사이 소비자물가가 43배, 도시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이 15배 오르는 동안 서울 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 올랐다.
- 2008년 기준으로 땅값은 5,000조 원, 집값은 3,000조 원이다. 대한민국 땅을 팔면 캐나다를 6번, 프랑스를 9번 살 수 있다. 아파트 임대료도 세계 3위로 최고 수준으로 비싸다.
- 대한민국 최고 집 부자 한 명이 1,083채를 소유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전체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사유지 기준 국토의 74%를 5.5%의 땅 부자가 소유하고 있다.
- 높은 주택가격과 극심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심각한 어려움에

쳐해있다. 따라서 적정주거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전세가격 연평균 변동률 : 3.9%(91~97년)→5.0%(00~08년)→6.6%(09~13년)
- 전세거주비중은 2000년 28.2%에서 2010년 21.7%로 감소하고 월세거주비중은 동기간에 14.8%에서 21.5%로 증가
- 서울의 경우 소득 1분위 저소득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2.3%
-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며, 끊임없는 주거 유량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 지금까지 사유지 강제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업자가 활용토록 했고, 정부 직접 건설분도 임대보다는 분양에 치중했다.
- 우리나라의 전체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0%(2012년) (OECD평균 11.5%(2007년), 영국 17.5%(2010년), 프랑스 17.0%(2005년), 일본 6.1%(2008년), 미국 1.0%(2009년))에 불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은 접근하기 어렵다.
- 넘치는 불로소득, 고장 난 환수장치
- 1980~2001년 사이 땅값이 상승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1,284조 원이며, 2000~2006년 사이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 차액은 648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세제 등을 통해 환수된 개발이익은 5% 수준으로 대부분의 불로소득이 사유화되고 있다.
-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었고, 내수 경제가 타격을 받으며 기업은 생산적인 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기형적 산업구조를 낳게 되었다.

2. 기초와 방향

- 땅은 삶이 뿌리내리는 토대이다. 공거나 물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그 땅 위에서 주거하는 공간으로서 ‘집’은 사람들이 정주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조건이 된다.
- ‘집’은 인간생존의 기본적 조건인 의식주라는 차원에서 볼 때, ‘특수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라는 재산권 차원과는 별도로 거주하는 거주자도 집의 주인

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즉 ‘재산권’과 더불어 ‘주거권’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집은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이제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수단 부동산이 아니라 안정되게 머무를 수 있는 주거의 장소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 자영업자 임차인에게 ‘가게’ 역시 생계와 직결된 삶의 장소가 된다.
- 녹색당은 삶의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적정 주거권을 보장하고, 빌려 쓰는 자들의 연대를 형성하며, 비뚤어진 토지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II. 세부 공약

1. 공정한 주거임대료 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다.

가. 지자체, 임차인, 임대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기준의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난 4년간 유사한 종류, 시설, 성상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독일의 ‘지역기준임대료’ 제도처럼, 역세권(위치), 10년(성상), 단독주택(유사종류), 주방, 화장실, 난방(시설) 등에 따른 차임일람표를 2년마다 공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표준임대료 제도의 기능

- ①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임대료 교섭이 가능
- ② 지자체가 주택임대차 행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인프라
- ③ 국회의 입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의 근거가 됨
- ④ 표준임대료의 공시만으로도 일정한 임대료 인상규제의 권고적 효과 발생
- ⑤ 정부도 광역단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조정결과에 법적효력 부과 방침
- ⑥ 여러 이유로 임대료가 급락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최소한의 임대료를 보장해 줄 수 있음

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하겠다.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전·월세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인 상한선을 만든다.
 - 표준임대료제도 도입하겠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겠다.
- 계약 자동연장제도(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10년간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다.
 -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모두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인정하고 있다.

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서민들의 생업 여건에 맞는 입지 선정, 평형 다양화, 임대료 차등화
 -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주도형 임대 사업(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활성화

-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집수리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계약임대 방식을 활용
- 고령자와 장애인용 임대주택 확대
- 공공택지는 공공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겠다.
- 앞으로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는 가능한 한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
- 공공주택(임대, 토지임대부)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협동조합 참여를 장려하겠다.
- 공공임대주택 협동조합에 단지 관리·보수·운영 권한과 단지 내 상가의 운영·관리 권한을 부여
- 공동체토지신탁(CLT) 또는 공공토지임대부주택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공공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게 함.

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 주택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
- 집수리 사업을 보완하겠다.
- 소득기준 완화, 주택 내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시설개조 지원,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지원
-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
-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전세지원을 확대한다.

마.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

-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민 대상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겠다.
- 쪽방상당소 역량 강화
- 쪽방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쪽방촌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및 공동작업장 지원 확대
- 쪽방 재임대사업: 기존 쪽방·고시원 건물을 임차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

대하는 사업 확대

- 노숙인(가족 재결합·주거독립 준비자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
-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확보 및 입주 지원
- －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 － 노숙인 실태 입소 생활시설 개선과 일자리 연계강화

2. 상가세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1) 진단과 방향

- 700만 자영업 시대 속에 임차상인은 5년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법에서 보장하는 갱신기간 5년을 초과할 경우, 임차상인은 대단히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영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상가권리금은 임차인의 존재와 노력을 통해 형성된 자산으로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권만을 근거로 약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임대인의 부당한 소유권 행사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빼앗긴 임차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만 하고, 소송 자체의 생소함과 어려움이 크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까지, 영세 임차상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소송과 감정평가 비용 때문에 권리를 찾기 위한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세부 과제

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엄격히 보장하겠다.

나. 양도양수를 비롯한 상가권리금을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겠다.

- － 계약 종료 전 3개월 기간만 권리 양도양수의 기회가 보장됨을 알고, 이 기간 외에 하는 양도양수를 건물주가 방해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 월세 3기 연체 기록만으로 수천 수억의 권리금을 회수 할 기회를 박탈하고, 건물주가 불로소득으로 취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건물주가 영리 목적으로 1년 반 동안 사용을 안 할 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가 보장이 안 된다. 이를 삭제 혹은 현 권리 시세에 비등한 기간인 36개월 내지는 그 이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

다. 재건축으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 이전 수준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 신규임차인과 임대인간에 계약 권리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사전 고지하면 계약이 불발되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 하기가 어렵다.

라. 임차인과 건물주가 포함된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

3. 토지임대 불로소득 환수 등, '토지정의'를 강화하겠다.

1) 진단과 방향

-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부담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세(보유세+거래세) 중 보유세의 비중이 너무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 특히 상가·빌딩의 부속토지에는 주택과 일반 토지보다 훨씬 가벼운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재벌 및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2) 세부 과제

가. 고액 비거주용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겠다.

-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한다.
 - 재벌 및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집중 보유하고 있는 별도합산 토지(상가·빌딩의 부속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과세상 불공평을 시정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및 잡종지)의 보유세 부담은 완화된 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나대지나 잡종지를 과다보유한 사람들은 투기 목적이 있

다고 간주하여 과세 수준을 2008년 완화되기 전 상태로 복원

- 추가 세수의 용도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 및 기본소득 재원이 된다.
- 비거주용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완화한다.

나.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대상자는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으로 한다.
- 대상자는 취임 시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한다.
- 증명을 하지 않거나 증명이 불충분한 부동산은 백지로 신탁하게 하도록 한다.
- 퇴직 시에는 부동산의 시가와 매입가의 원리금 중 낮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다.

다. 부동산 소유 통계를 공개하겠다.

- 부동산 소유 통계를 물가나 주식 통계처럼 국가 지정통계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4-1. 노동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하자

I. 총론

1. 현실과 진단

-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은 인간이 살면서 꼭 필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벗어나 인간의 삶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비에 중독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대기업과 중앙집중구조, 성장신화가 이를 견인하고 있다.
- 노동은 생활의 물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 사회가 어떤 노동을 지향하는가는 그 사회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맺어갈 것인가를 보여준다. 지금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추구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삶과 생태계 파괴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 사회의 노동 실태는 사회구성원 관계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우리 중 다수는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는 쉼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는 먹고 살기 어려워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지금까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하는 정부는 있어도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는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노동’의 문제를 ‘경제’의 하위변수로만 생각해왔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실현하기 힘들며 성장이테올로기 앞에서 노동은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받아왔다.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노동자 스스로가 경영자 정체성을 자기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 이처럼 왜곡된 노동을 바로잡는 일은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지향하는

녹색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땅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2. 기초와 방향

- 녹색당일이 삶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과잉노동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불안정노동을 없애고 최소필요노동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성장위주의 한국사회를 탈노동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 불안정노동과 과잉경쟁노동을 만들었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에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 이윤을 독식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을 떨어트리고 수백 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았으며 탈세와 비자금으로 언론을 장식하는 자본가와 실질임금 상승이 없고 나날이 부채가 늘어가는 노동자의 잘못된 분배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 지금의 한국사회는 인간뿐만 아니라 여타 생명들과 자연에 대한 착취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 반 생태적 노동, 불필요한 노동이 삶과 생명을 잠식해가고 있다. 이제 생태계에 부하를 가하는 산업들을 줄이고, 녹색경제로 나아감으로써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전 사회 계층의 참여 속에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노동환경을 해소하고 노동인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공공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한다.

II. 세부 공약

1.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겠다.

1) 세부 과제

가. 주 35시간 노동제 법제화하고 ‘칼퇴근’을 가능토록 하겠다.

- 현재 주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휴일노동을 예외로 인정하고 연장노동 시간을 1주일에 12시간 인정하여 실제로는 주68시간(40시간+12시간+16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이 보다 많은 시간을 노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연히도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다. 휴일근로를 예외로 하는 것을 없애고 현 주40시간 노동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주 35시간 노동제로 가야 한다. 초과노동시간도 10시간으로 줄여서 주35+10시간 노동제를 법제화 하자.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연장노동 역시 현행 12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①항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일에 10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 주당 10시간 외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연장노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칼퇴근법”). 이에 더해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고 (현재는 근기법 56조에서 50% 이상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연장근로를 한 시간 만큼 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일종의 “시간적립제”) 연장근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늘려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한다. 변칙적인 연장근로를 규제하기 위해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며, 탈법적인 교대제를 규제해서 1일 6시간 노동 기준으로 교대제를 개선해야 한다.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의 업종에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인정한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농림, 수산산업, 감시단속직 근로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시킨 제63조(적용의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 기업규모에 따라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산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지급을 함께 진행하여 일정 수준의 임금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심야노동을 금지하고 교대제를 개선하여 수면시간을 보장하겠다.

- 경영효율성을 위한 교대제 금지 : 교대제가 활용되고 있는 이유 중 공공서비스 사업과 생산기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는 최소 필요 인원만 근무하도록 하고, 경영효율성을 위한 교대제는 금지해야 한다. 경영효율성을 위한 교대제는 전면 금지시켜야 하고, 특히 야간노동을 폐지하여 주간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야간 업무를 규제하고, 자

동차산업 등 제조업의 야간교대근무를 폐지해야 한다.

- 교대제 노동자 수면시간 보장 및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 최소 필요 인원으로 교대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근무가 포함될 경우 근무시간 중 일정한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야간교대근무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등 교대 노동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간 2교대제 중심의 교대제를 지원한다.

다. 휴일을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겠다.

- 모든 노동자가 2주 휴가를 갈 수 있게 하자 : 연차를 2배로 늘려 30일로 하고, 연차수당을 시급의 1.5배로 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한다.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을 삭제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할의 휴가를 부여한다.
- 공동체 휴가 : 기존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가족 휴가 개념을 공동체 활동 휴가로 전환 및 확대하여 자기 시간도 확보하고,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 내에서의 활동도 보장한다. 1인 가족 역시 봉사활동 등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 동등한 휴가를 부여받도록 한다.
- 5년을 일하면 1년의 안식년 부여 :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였으며, 인간의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임금 노동에 의존하여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기획된 기존의 노무체계는 저성장 시대와 수명연장과 충돌하여 세대 갈등을 양산한다. 이에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안식년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식의 부여를 통한 탈노동 사회의 진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 5년 8개월이다. 제대로 된 휴가를 위해서 안식년 기간 동안 고용보험재원을 활용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인 230만원을 지급액 상한으로 한다.
-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 기간에 총 4주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 보장 : 노동자 건강 증진, 노동시간 단축,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여름철 폭염 기간과 겨울철 한파 기간에 각 2주에 해당하는 유급순환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오존지수 상승 등에 대비하여 연간 1주에 해당하는 재난안전 휴일제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노동시간 단축에 기여

한다.

2.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

1) 세부 과제

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실질적인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키겠다.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자는 것을 뛰어넘자 :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1,166,220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가족 생계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기준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월 1,506,179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2014년 1인 가구 가계지출(월 1,664,787원)에도 못 미친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5년 표준생계비’에서 단신가구의 경우는 2,164,664원이다. 최저임금은 생계유지의 차원에서 보장이 되어야하고 노동자 개인이 노동자가 속한 가구가 생활이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
-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자 :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빈곤 심화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갈수록 낮아져서 근로자간 임금불평등이 OECD국가 중 최악이다. 성장이 분배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 생활임금이 모두에게 도입되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원 :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생활임금 개념을 적용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로 해서 몇몇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사회 전반에 도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1만원이다.
- 성별, 고용형태별 구분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화 : 한국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이 책정되기 보다는 성별, 고용형태별 차이가 임금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노동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이라는 차이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임금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실질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사 이익균점제를 통한 소득분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왔다.

- 산업별 교섭의 활성화로 산별 임금체계 형성 : 산업별 단체교섭체계를 확대해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서 산업별 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접적인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별교섭을 법제화해야 한다.
- 경영자 최고임금제와 기업이익분배법 제정 : 민간기업 CEO의 최고임금은 사내 최저임금의 10배 미만으로 제한하며,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법상 최저임금의 10배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지나친 소득불평등을 시정한다. 기업이윤의 주주배당이 지난 2년 평균 주주 배당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거나, 동종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배당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시정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프랑스의 기업이익분배법 참조)
- 노동자의 경영참여 강화로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구조 형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 간 협의 사항(제20조)으로 되어 있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지원,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항목을 의결사항(제21조)으로 변경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노사이익균점제 도입 : 현행 근참법의 개정을 넘어서 노동자는 ‘노력’을 출자했다는 의미에서 자본가와 다름없는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기업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당연 구성원임을 명시하는 ‘경제민주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사이익균점제와 시민들의 자립·자치·협동적 조직인 협동조합의 획기적인 확대로 실질적인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제헌헌법에서 제정되었다.

3.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안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

1) 세부 과제

가.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대 :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공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시장 중심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제한적으로 비영리법인만 수행하도록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임금 기준을 설정하고,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인식개선사업을 펼친다.
- 녹색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햇빛발전소 등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녹색일 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민 의무 고용 비율을 정 해서 고용을 창출한다.
- 녹색일자리 확대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 : 대기, 소음, 수자원, 토양 등 전통적인 환경산업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등을 통한 새로운 녹색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청년 일자리 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한다.
-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역 민관(노사정) 협의체 운영 : 지역 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협약을 맺고 이에 따른 고용 안정 기업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실업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선도하는 고용안정 기업에 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나.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

-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 및 지원하는 제도 정비
 - －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점진적 축소와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 ‘좋은’ ‘녹색’ 일자리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 녹색성장기본법의 녹색전환기본법 전환 등 제반 법령과 탄소세, 최종제품에 대한 환경세, 산업별 차등 세율 적용, 혼잡통행세 등 세제를 정비한다.
 - － 녹색구매제도(공공조달의 일정 비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 지역에너지자립목표제,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으로 다양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한다.

-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녹색산업으로의 중장기 전환 프로그램
 - ‘탈핵 및 에너지전환 관리위원회’ 산하에 정부와 노동계, 기업, 시민사회, 과학기술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설치해 전환의 경로를 공동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모색지원한다.
 -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산업과 녹색산업을 위원회의 집중 관리 및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주요 전환과정을 관리한다.

〈전환과정의 1차 집중 관리 및 지원 대상〉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녹색전환	녹색산업
• 부실 조선 산업 → 풍력 제조 및 설치 산업 • 자동차 산업 → 친환경차, 대중교통 제작 사업 • 토건산업 → 철도망 건설 사업으로	• 재생에너지 산업 • 친환경 농업 및 유통업 • 자원재활용산업 • 에너지효율화산업 등

-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녹색이면서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시한다.
 - 에너지·자원 절약적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산업 전환에 우선 지원으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한다.
 - 중앙 및 지역, 기업 각각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 한다.
 - 전환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노동자 신규 및 재교육을 비롯한 전환훈련 프로그램, 경력개발프로그램, 자원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장기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녹색 일자리 범주〉

● <u>녹색이지만 괜찮지 않은 일자리</u> - 적절한 직업 안전성 없는 전자제품 재활용 노동자들 - 저임금 태양 패널 설치자들 - 착취당하는 바이오연료 플랜테이션 일용 노동자들	● <u>녹색이면서 괜찮은 일자리</u> - 조직화된 풍력과 태양력 일자리들 - 녹색 건축가들 - 충분한 임금을 받는 대중교통 노동자들
● <u>녹색도 괜찮지도 않은 일자리</u> - 적절한 안정성 없는 석탄 광업 노동자들 -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화훼산업 여성 노동자들 - 돼지 도살장 노동자들	● <u>괜찮지만 녹색이 아닌 일자리</u> - 조직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 - 화학 엔지니어들 - 항공 파일럿들

자료: UNEP, 2008(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09 재인용)

- 노동자와 지역사회 참여의 친환경 작업장 전환 프로그램과 반환경·반노동 기업 퇴출제 : 노동자와 지역주민 및 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작업장 전환 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개별 기업 수준의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위원회는 역내 작업장이 주변 지역과 노동자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물 절약 시스템, 자원사용 및 쓰레기 배출의 최소화과 재처리·재활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정 지침의 마련 및 집행 감시를 수행한다.
-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녹색 참관일’ 지정, ‘노동·환경 전문위원’ 훈련 등을 추진하고, 참여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4고1저(고오염, 고에너지 소비, 고폐기물 배출, 고 산재, 저효율)’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반환경·반노동기업 퇴출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즉 해당 작업장이 주어진 기한 안에 기준치 이상 정비 또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 폐쇄하며, 대기업일 경우 신규 프로젝트 비준 제한 등을 통해 퇴출시킨다.
 - 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환경영향 및 노동조건에 관한 특별감시법’을 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이를 기업책임법과 연계하여 만들어 간다.

다. 사회적경제를 확대하고 대안적/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기존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더해 공유지의 무상 임대,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생산물 우선 구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조성 및 지원법을 제정한다.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1만 명에 1협동조합을 실현해 나간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반드시 협동조합과 협의토록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며, 협동조합이 지역 내 순환경제구조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중간조직 지원업무를 진행한다.
- 협동조합이 보험과 금융업무를 일정 부분 가능하게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자금을 협동조합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에게는 보다 저렴한 보험과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파산기업인수와 경영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진정한 협동조합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 농협, 신협의 구조를 개편하여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한다.
- 청년들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어,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적이며 사회공헌적인 활동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녹색경제로, 대안일자리로 :

- 대표적인 녹색산업의 많은 부문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접근이 보다 쉽고, 보다 지속가능하다.
- 지역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농업 및 유통, 재활용 및 에너지효율화 산업 등의 전환에서 지역에 기반한 협동조합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에서의 수익성보다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사회적 가치(예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은)를 보다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개발되지 못한 녹색경제의 시장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혁신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틈새시장, 틈새 기술을 발굴해내는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 전형적인 녹색산업뿐만 아니라 대안 문화, 적정기술, 돌봄노동의 재사회화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대안 경제, 대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여타 산업의 전환에서 정의로운 과정

이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의사결정권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안경제, 대안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4.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이 되도록 하겠다.

1) 세부 과제

가.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겠다.

- 엄격한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남용 규제 :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특별법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일시·대체적 사유로 제한해야 한다.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 상시지속적 업무에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일용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직으로 전환 파견법 개정을 통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규정하고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거나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사용자 책임회피 문제 해결 :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변화된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그래서 특정사용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 무기계약직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 정부와 지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장만이 아닌 임금 등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근속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규직제로 편재한다. (서울시 공무원 사례 참조)
- 간접고용의 직영화 : 청사 시설관리,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등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사용자로서 행동하거나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는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민간업자와의 오랜 결탁, 비효율적인 중복관리비용 지출 등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재활용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

기 등)의 수거, 분류 및 처리 업무의 직영화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나. 안전한 노동환경과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

○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기업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안전의무의 준수를 사회적·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재해사고시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단순히 사후 처벌만을 강력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 ‘안전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게 하여, 안전의무 책임자들이 그 의무를 준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참조 : 산재사망을 단순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살인죄로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1년의 총매출액 중 2.5%에서 1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벌금의 상한선은 없다. 벌금 이외에도 해당 기업은 범죄 사실을 지역 또는 국가의 언론에 광고한다.